

제18회 관광벤처사업 성장부문 모집 공고

우수한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「제18회 관광벤처사업 성장부문」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4월 29일

※ 본 공모는 한국관광산업포털 '투어라즈>공고·공모'에서 접수하며,

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한국평가데이터(KoDATA)를 통한 기업등록(인증)이 필요합니다.

투어라즈 회원가입 시 귀사의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한국평가데이터에 기업정보를 등록하신 후 투어라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
26년 5월 7일까지 회원가입 및 한국평가데이터(KoDATA)를 통한 기업등록(인증)이 안 되어 있을 경우, 접수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습니다.

이에, 기업 등록에 1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어 공모 접수 일정에 차질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한국평가데이터(KoDATA)등록(인증)에는 1주 내외 소요될 수 있음

* 참고3(별첨) '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공모 신청 방법' 필독 및 투어라즈 > (메뉴)사업·공모 > (메뉴)공고·공모 > '투어라즈 기업등록 방법 보러가기' 등 참고

* 한국평가데이터(KoDATA) 기업등록 진행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(02-3215-2543)
기업등록 접수확인 및 진행상태 문의 (02-3279-6500)

I

모집개요

- 주최/주관** : 문화체육관광부/한국관광공사
- 사업목적** : 창의적인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여 관광분야 창업 활성화 및 한국관광산업 경쟁력 강화
- 지원대상** : 창업 후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(사업공고일 2026. 4. 29.기준)인 성장기업으로서 본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지원내용** : 사업화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관광벤처확인증 발급
- 지원기간** : 협약 후 5개월 이내(2026년 7월 ~ 2026년 11월 예정)
- 선정규모** : 25개 내외
- 모집기간** : 2026년 4월 29일(수) ~ 5월 15일(금) 15:00까지

□ 모집유형

모집유형	개 념	예 시
관광체험 서비스	정보탐색, 이동, 숙박, 체험 등 관광여정에 플랫폼 기반의 예약·결제 서비스 제공 등 혁신적 기술로 관광편의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합 예약·결제 플랫폼(숙박, 항공, 체험·교통) • 무인·스마트 관광 안내(키오스크, 모바일앱, 챗봇) • 방한 관광객 대상 간편결제·환전·보험 서비스
실감형 관광콘텐츠	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AR/VR/XR기반 관광지·문화유산 체험 콘텐츠 • 메타버스 관광, 가상 투어·체험형 전시 • 테마여행 상품(한류, 미식, 반려동물, 러닝 캠핑, 의료관광, MICE 등)
관광인프라	오프라인 기반시설 또는 물적 자원을 핵심기반으로 하는 관광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테마공원·농촌체험·복합 관광시설 운영 • 공유 모빌리티(전기차·자전거·킥보드 등) 관광 연계 서비스
관광딥테크	AI·빅데이터·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기업 운영 효율화 및 관광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 중심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AI기반 여행 큐레이션·일정 추천 서비스 • 피지컬 AI(로보틱스)기반 관광서비스 솔루션 • 관광기업용 전사자원관리(ERP)·고객관리(CRM)·숙박운영관리(PMS)·SaaS • 위치정보(GIS)·빅데이터 기반 관광분석 서비스

- ① 사업 아이템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공모전 신청
- ② 융·복합 아이템일 경우 모집유형 중 주력부문 선택
- ③ 모집유형 구분 없이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

II 지원요건

□ 지원자격

-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성장 창업자로 사업 공고일(2026. 4. 29.)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- **성장창업자** : 사업개시일 부터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
* 창업일이 '19.04.29. ~ '23.04.28. 해당되는 창업기업
- **창업일 기준** : (개인)사업자등록증명 개업일, (법인)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
- **공동/각자대표** : 대표자 전원이 '지원자격'에 해당, '제외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함
- **복수 사업자** :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해당자
※ 공사는 본 모집공고의 주관기관으로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참가기업의 지원자격을 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

- (패스트트랙 기업) 업력 3년 이하의 기업이라도, 초기부문에 해당하는 한국관광공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기 협약을 완료한 자

- **관광벤처공모 초기부문** : 2024년(15회), 2025년(16회) 초기부문 선정자
- **관광엑셀러레이팅 기업** : 2024년 선정기업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인 경우, 관광벤처 초기/성장부문 중 선택 지원 가능

□ 지원 제외대상

- 본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
- 관광분야 외 사업아이템으로 공모전에 신청하는 자
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◆ 지원제외 대상 업종

- ①일반유희주점업 56211 ②무도유희주점업 56212 ③카지노 운영업 91242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, 그 밖에 1-4에 준하는 업종
- 대상업종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 kssc.kostat.go.kr) 참조

-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' 중 [붙임1]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거나, 지원받을 예정인 자
 - * 협약 이후에도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' 중복 수행 불가함
 - * [붙임1] 목록 외에도 중앙정부(처) 및 공공기관 등의 '창업지원사업' (사업화 자금이 포함된)의 경우 공사에 중복 수행 가능 여부 사전문의(tourbiz_contest10@knto.or.kr) 요망
 - * 단,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- ※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「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(전담기관)이 운영하는 '사업화' 유형 및 '글로벌' 유형 등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, [붙임1] 참고
- 한국관광공사 지원사업 중복수혜 범위

◆ 관광벤처사업 공모 지원가능 범위

- 최근 3년간('23~'25) 관광벤처 공모에 참가한 수혜자는 아래기준으로 신청가능
 - **초기벤처** : 2023년(14회), 2024년(15회), 2025년(16회) 선정자 ☞ 성장 지원가능
 - **성장벤처** : 지원불가
- 공고일 기준 **제17회 관광벤처사업, 2026 BETTER리 사업 공모, 2026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공모 중 어느 하나라도 최종선정 통보 받은 경우(통보 후 자진 포기자 포함) 신청불가**

◆ 한국관광공사 창업사업화지원 중복사업 범위

- 관광기업혁신바우처, 관광글로벌챌린지프로그램, 관광플러스테크, 관광두레, 관광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(부산,인천,대전세종,경남,광주,울산,경북,전북), 관광 오픈이노베이션, BETTER리 지원사업, 섬-기업 상생 관광 프로젝트 등
- 사업화지원금 외 상금, 인건비, 사무공간 지원 등의 경우는 신청 가능

- 기 출원·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·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

-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
- 공고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재직자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

◆ 예외조건 <공모 접수 마감일 '26. 5. 15.기준, 증빙자료 제출필수>

-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- ②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
-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

◆ 예외조건 <공모 접수 마감일 '26. 5. 15.기준, 증빙자료 제출필수>

-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-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- ③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
-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* 근로기준법 위반, 공정거래행위 위반,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등

III

지원내용

- **지원기간** : 총 5개월 이내 (협약체결일 ~ 2026. 11월 예정)
- **지원내용** :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

구분	지원내용						
사업화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화지원금 규모 : 평균 6.5천만원 (최대 1억원 ~ 최소 5천만) *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지원금(정부지원금) 차등 지원 ▪ 총사업비 구성 : 사업화지원금 + 자부담(지원금의 20% 현물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사업비(예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화지원금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부담(현물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20백만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백만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백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▪ 사용기간 : 협약기간 동안만 집행가능(~'26.11월까지) ▪ 사용기준 : 광고선전비, 인건비, 외주용역비 등 [붙임2] 참고 	총사업비(예)	사업화지원금	자부담(현물)	120백만원	100백만원	20백만원
총사업비(예)	사업화지원금	자부담(현물)					
120백만원	100백만원	20백만원					
기본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업진단 : 기업별 심화 인터뷰를 통한 세부 계획(현황, 수요파악 등) 수립 ▪ 전담멘토 : 성장기업 맞춤형(사업 및 IR 고도화 등) 전담 멘토링 운영 ▪ 전문컨설팅 : 기업별 수요기반 특화분야 전문가 컨설팅 						
특화 프로그램 (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지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청계천클럽 : 미니 IR 형식의 소규모 투자유치 매칭 및 네트워킹 ▪ 알럼나이 : 선배기업의 사업 노하우 전수 및 협업을 위한 교류 ▪ 비즈니스 밋업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B2G/B2B) 공사/지자체, 기업 간 투자유치 및 사업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- (이음주간 연계) 관광벤처기업 선후배 만남, 사업 노하우 전수 ▪ 투자상담회 및 파이널 데모데이 : 관광벤처-투자전문가 1:1 오프라인 투자상담 및 관광벤처 대상 데모데이 개최 						
다자간 협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광기업 이음주간 : 데모데이, 1:1밋업 등을 통한 관광벤처기업과 투자자, 지자체, 글로벌 기업간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						
홍보·판로개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홍보마케팅 : 컨설팅, 광고지원(보도자료 등),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연중 지원 						
시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종성과평가 결과 우수 성장관광벤처기업 대상 장관상/사장상 및 시상금 지급 						
성장관광벤처기업 자격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성장관광벤처기업 자격 부여(협약일로부터 3년간 유효) *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'관광벤처확인증' 발급 * 자격유지 통과 시 성장관광벤처기업 자격 2년 연장 						

IV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**공모기간** : 2026년 4월 29일(수) ~ 5월 15일(금) 15:00까지

< 유의 사항 >

- ① 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한국평가데이터(KoDATA) 기업정보 등록(인증) 등의 절차의 경우, 1주 내외 소요될 수 있으며,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 및 문의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공모 마감일 3~4일 전(근무일 기준)에 공모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② 신청·접수는 5. 15.(금) **15:00 정각에 종료**(신규신청 불가, 유형변경 등 불가)
- ③ 반드시 '등록'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·접수가 완료됨
- ④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신청·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변경·삭제 불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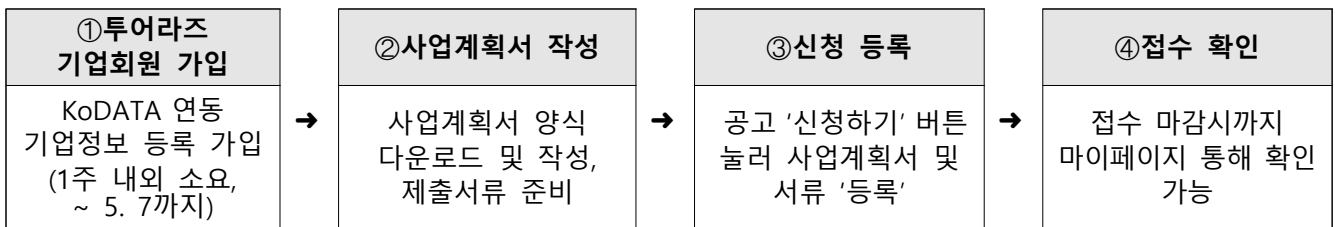
□ **신청방법** : 투어라즈(touraz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 * 우편접수 불가

○ 신청·접수 시 투어라즈 회원가입이 필요함

※ 투어라즈 회원가입 시, 귀사의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, 한국평가데이터(주)(KoDATA)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후 투어라즈에 가입할 수 있음
(1주 내외 소요)

* 투어라즈 회원가입 : 참고3(별첨) '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공모 신청 방법' 참조

*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인증 : 참고3(별첨) 및 별첨1(양식) 참조 (투어라즈 공고·공모 > '투어라즈 기업등록 방법 보러가기' 또는 투어라즈 이용 안내 > '자주 묻는 질문' 게시글 참조)



* 투어라즈 시스템 로그인 후 60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되며 '등록' 전 작성된 내용은 저장되지 않으므로, 별도의 문서에서 작업하시며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
□ **1차 제출서류(접수마감일, 5월 15일 15시까지)**

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①사업계획서 별첨1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첨2) 창·폐업 및 창업지원사업 수혜이력	온라인 제출(PDF 파일로만 제출) ※ 공사 제공양식 준수 필수 (임의양식 평가대상 제외)	PDF 파일로 제출 ※ 양식 확인 투어라즈>공고·공모 https://touraz.kr

② 업력 증빙 서류	②-1 사실증명 (총사업자등록내역)	발급한 증명원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 ※ 유의사항 : 발급일자는 반드시 '26. 4. 29. 이후, 온라인 발급 시 3시간 내외 소요되어 사전 준비요망 ※ 발급처 (온라인) 국세청 홈택스 (오프라인) 관할 세무서	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에 기재된 대표자의 ①모든 창·폐업이력 내역 온라인 입력 및 ②업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(개별 파일 PDF로 저장 후 전체 증빙 ZIP 확장자로 압축하여 제출)
	②-2 가. 창업이력이 있는 경우 ① 모든 계속사업의 (개인) 사업자등록증명, (법인) 사업자등록증명 +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 필수제출' ②공동(각자) 대표일 경우 각 대표별 세부증빙 모두 제출 ※ 사업자등록증 인정 불가 (예시1) 공동대표 2인의 경우 → 2인 각각의 총사업자등록내역과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, 법인등기부등본, 폐업사실증명 제출 필요		
	②-2 나.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폐업내역의 '폐업사실증명' (예시1) 총사업자등록내역에 기재된 법인 3개 중 유지 2개, 폐업 1개 → 유지 중인 2개 법인에 대한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 등본과, 폐업한 1개 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 모두 제출 필요 (예시2) 공동대표 2인의 경우 → 2인 각각의 총사업자등록내역과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, 법인등기부등본, 폐업사실증명 제출 필요		
③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		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,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발급된 것만 인정 ※ 증명서 제출일 기준 유효한(유효기간) 증명서로 서류상 체납 사실이 없어야함	개별 PDF 파일로 제출
패스트 트랙 해당자	패스트트랙을 증명할 별도 제출서류 없음	'사업계획서' 및 투어라즈 시스템 내 해당 패스트트랙 사업명 기재	
가점 서류 (해당자에 한함)	사업자등록증명 (지역우대)	신청기업의 '사업자등록증명' 내 기재된 정보(사업장 소재지)로 확인 단, 모집공고일('26. 4. 29.)이후 발급 서류에 한해 가점 인정함	②업력증빙서류로 같음 (별도 제출 불필요)
	사실증명 (청년우대)	대표자의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내 기재된 정보(주민등록번호)로 확인 * 공동/각자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 해당 시 가점 인정함	
	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(사회적경제조직 우대)	신청기업의 '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'를 스캔하여 투어라즈 시스템에 첨부	PDF 파일로 제출

□ 2차 제출서류 [서류평가 합격자 대상, 6월 9일까지]

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①2차 발표자료	공사 제공양식(PDF 파일로 제출)	
②중소기업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	제출일 기준 유효한(유효기간) 확인서로 중소기업부 장관 명의 발급분만 인정
③주주명부	자유양식	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제출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관광관련 사업아이템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만 참가 가능
- 복수 사업자의 경우 공모전 신청 시 관광관련 사업목적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 불가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'신청 자격'에 해당하고, '신청 제외대상'에 해당하지 않아야함
-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만 신청 가능하며, 지점·지사·부설 연구소 등은 참여 불가
- '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정부부처 창업지원사업*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가능(타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)
- ※ 동시 선정 시, 협약체결일(26. 7. 1. 예정) 이전에 반드시 1개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,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* 붙임1 참조
- 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「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(전담기관)가 운영하는 '사업화 유형 및 글로벌 유형 등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- ** 공고일 기준 제17회 관광벤처사업, 2026 BETTER로 사업 공모, 2026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공모 중 어느 하나라도 최종선정 통보 받은 경우(통보 후 자진 포기자 포함) 「18회 관광벤처사업」 신청불가
- 공모전 신청자는 모집요강 및 [붙임2]의 사업화자금 사용기준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
- 참가신청 및 제출자료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(투어라즈 접수 필수)
- 신청마감일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최소 3~4일 전 신청 권장
- * 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한국평가데이터(KoDATA) 기업등록(인증) 완료기업에 한함

- 사업계획서는 접수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만 허용되며, 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
- 사업계획서 상의 모든 항목은 평가점수에 반영되며, 작성항목 중 미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제출서류는 접수일 마감까지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되며,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및 불인정
- 각종 서류 제출 후 접수 및 서류 첨부 여부 반드시 확인. 미확인으로 접수 및 제출서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나 서류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
-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심사·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,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발각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·도용하거나 대필하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,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
-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 종료 후 파기
-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기준 공고일 이후(공고일 포함, '26. 4. 29.~)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
- 1차 합격자의 경우 2차 발표자료* 포함 제반서류 일체를 기한 내 제출해야하며, 2차 발표평가는 대표자 참여가 원칙
 - * 2차 발표자료 양식 접수 사이트 내 별첨2 파일 참조
- 신청자는 모집개요, 지원요건, 지원내용,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, 신청시 유의사항 등 본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업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

□ 평가방법 및 기준

- 평가절차: 자격검토 → 1차 서류평가(2배수) → 2차 발표평가 → 최종 합격자 발표
- 평가기준:

평가항목	가중치		세부평가내용
	1차(서류)	2차(발표)	
1.사업개요 및 특징	10%	15%	1-1. 사업개발 동기 및 배경 1-2. 사업의 특징점
2.시장 및 사업모델	30%	35%	2-1. 시장현황 및 목표고객 2-2. 사업모델(Business Model) 2-3. 서비스(상품)의 시장성 2-4. 잠재리스크 및 대응방안
3.사업전략	30%	30%	3-1. 상품·서비스·인프라 개발 및 고도화 계획 3-2. 홍보 및 판로개척 3-3.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3-4. 일정계획 3-5. 사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 전망, 재무상태
4.관광산업 연계·확장 가능성	20%	10%	4-1. 관광산업 및 시장에 대한 이해 4-2. 사업과 관광산업 간 연계 및 확장 가능성 4-3. 관광산업 내 성과발생 가능성 및 기대효과
5.팀 역량	10%	10%	5-1. 사업자의 전문성 5-2. 사업운영 능력 5-3. 운영조직 및 일자리 창출계획
총 계	100%	100%	

- 우대사항: 가점 항목 해당 시 최대 3점부여
< 가점항목 및 점수 >

가점항목	적용기준	점수	비고
지역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(개인/법인) 상 소재지가 서울·경기·인천 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*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해당지역일 경우만 인정 ** 사업자등록증명 상 본사(점) 소재지 기준 	1점	최대 3점
청년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자로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내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상 '86. 4. 30. 이후 출생자 * 관련근거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 ** 공동/각자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함 	1점	
사회적경제조직 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유효기간 내 「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」 보유 기업 *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**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	1점	

* 1차 서류평가에 한하여 점수 적용

□ 최종선정

- 평가기준에 따라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
 - * 평가결과 및 사업비 활용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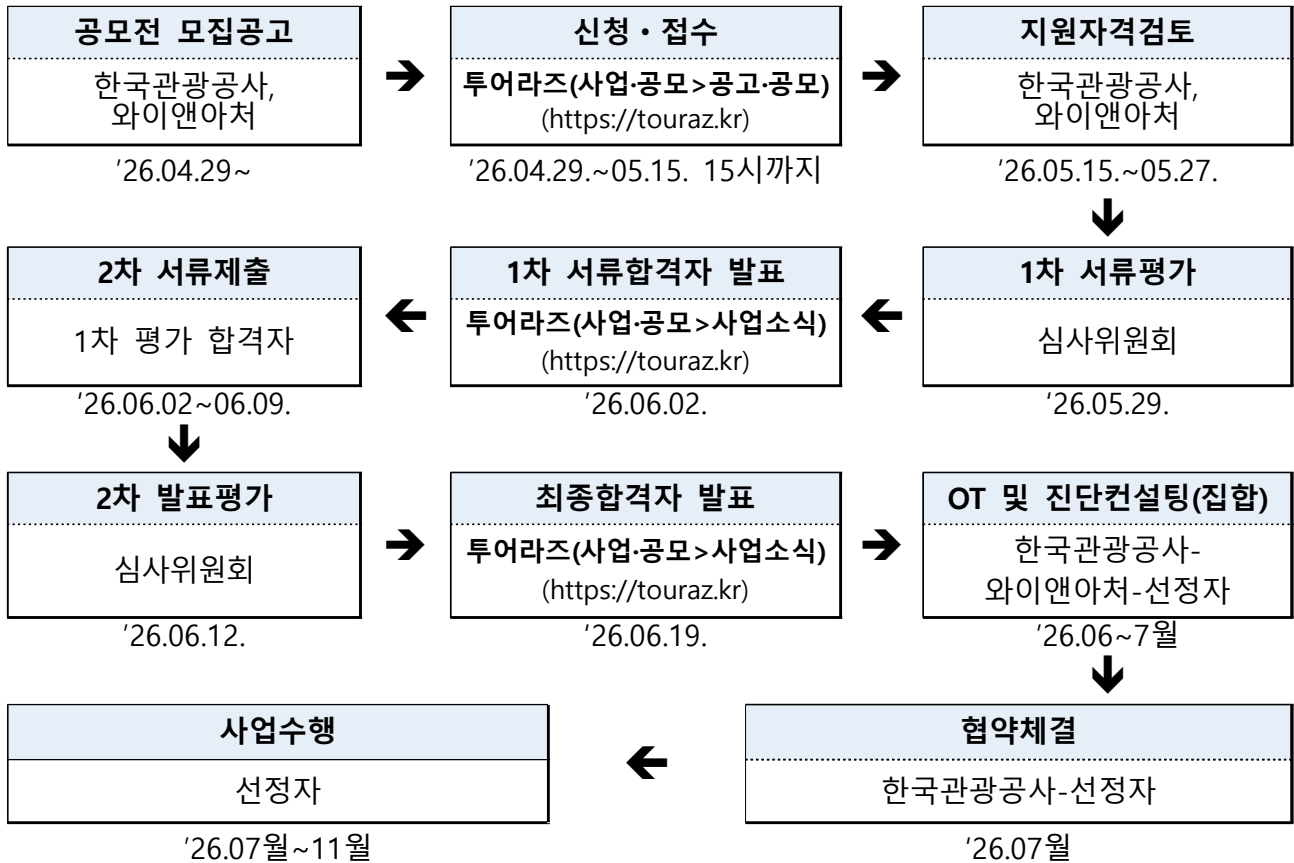
□ 평가제외 대상

- 제출서류 양식 미 준수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타 부문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접수하는 경우(예시: 예비 또는 초기관광벤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성장관광벤처에 접수하는 경우)
-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경우

< 공모 평가 및 선정 프로세스 >

구분	대상자	주요내용
지원자격 검토	공모 신청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출서류, 성장관광벤처 지원자격 등 검토 - 사업계획서 등 표준양식 준수 -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(계속사업자)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(폐업사업자)폐업사실증명 등 증빙서류 검토 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검토 등
1차 서류평가	지원자격 검토 합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평가방식: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▪ 평가기준: 사업개요 및 특징, 시장 및 사업모델, 사업 전략, 관광산업 연계·확장 가능성, 팀 역량 등 *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선발
1차 합격자 공지 (2배수)	1차평가 합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차 발표평가 준비
2차 서류제출	1차평가 합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차 발표자료 제출 ▪ 추가서류 제출 및 검토 - 중소기업확인서, (법인사업자의 경우) 주주명부 등
2차 발표평가	1차평가 합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평가방식: PT발표 및 질의응답 -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원칙, 팀원 1명 배석가능 (참석자 전원 신분증 지참) - 기 제출한 2차 발표자료를 활용함 ▪ 평가기준: 사업개요 및 특징, 시장 및 사업모델, 사업 전략, 관광산업 연계·확장 가능성, 팀 역량 등 *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시 1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을 선발하고, 1차 점수도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을 선발
최종선정	최종 합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합격자 심의 후 최종 선정자 확정

□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문의

- 문의처 : 제18회 성장관광벤처 공모 운영사무국(와이앤아처)
- 연락처 : 070-8833-1582
- 이메일 : tourbiz_contest10@knto.or.kr

※ 문의 전 반드시 **FAQ(별첨 참고2)를 확인**하신 후, FAQ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□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유의사항

- 본 공모전의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, 사업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
- 관광벤처사업 성장부문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3개월 이내 반드시 관광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(PMS)을 통한 사업비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함
 - * 지정된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주관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될 수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, 성장벤처 지원자격 위배 및 창업사업이 현행법에 저촉됨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◆ 창업지원사업 관련 법령 ◆

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'형법',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, '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'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

- 정부지원금 유용 및 편취 등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적발되었을 경우, 협약취소 및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,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음
-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
- 고의 거짓 등의 방법을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음

□ 기타 안내사항
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‘관광벤처사업 운영지침’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법령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- 공모전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응모해야 하며, 운영사무국은 응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
- 공사는 본 모집공고의 주관기관으로서 본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원 자격을 정할 수 있음
- 신청자는 본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수락하고 준수할 것을 약속함

연번	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
1	· 예비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2	· 예비창업패키지(사내벤처팀)	중소벤처기업부
3	· 초기창업패키지(일반형)	중소벤처기업부
4	· 초기창업패키지(딥테크 특화형)	중소벤처기업부
5	· 초기창업패키지(투자연계형)	중소벤처기업부
6	· 창업도약패키지(일반형)	중소벤처기업부
7	· 창업도약패키지(딥테크 특화형)	중소벤처기업부
8	· 창업도약패키지(투자연계형)	중소벤처기업부
9	·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	중소벤처기업부
10	·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	중소벤처기업부
11	·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(TIPS 창업사업화)	중소벤처기업부
12	·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(프리팁스)	중소벤처기업부
13	·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(포스트팁스)	중소벤처기업부
14	· 창업중심대학	중소벤처기업부
15	· 재도전성공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16	· 제품화 ALL-In-One 팩	중소벤처기업부
17	·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	중소벤처기업부
18	·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9	· AI·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	과학기술정보통신부
20	·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	기후에너지환경부
21	·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2	·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3	·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4	·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	문화체육관광부
25	·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6	·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·창업도약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7	·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8	·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9	·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	문화체육관광부
30	· (콘텐츠)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31	· (콘텐츠) 투자 연계 창업도약	문화체육관광부
32	·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	통일부
33	·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	통일부
34	·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	해양수산부
35	·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	산림청
36	· 경북·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	방위사업청
37	·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평화 창업 지원사업	방위사업청

※ 상기 목록 외, 중앙정부(처) 및 공공기관 등의 '창업지원사업' (사업화 자금이 포함된)의 경우 공사에 사전문의(tourbiz_contest10@knto.or.kr) 요망

붙임2

사업화 자금 사용기준

구분		집행기준
재료구입비		·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, 원료 또는 데이터 구입비용
외주용역비		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(시)제품 및 홈페이지(앱)를 제작 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비용
유형자산취득비 (총재무지원금 50%초과불가)		· 사업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, 설비, 비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
무형자산취득비		·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· 등록관련 비용
인건비		· 사업자 소속직원이 지원사업의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· 대표자 및 친족 등 지급불가
지급수수료	기자재 임차비	·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화에 필요한 기계장치, 공구, 부수 기자재, 서버 등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
	공간 임차비	·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에 필요한 사무공간 등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
	전시회 참가비	· 시제품 기획 및 홍보를 위해 국내·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
	시장반응조사비	· 상품 또는 체험서비스의 사전 고객 모니터링 및 시장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소요되는 체험비, 입장료, 가이드 비용, 테스트투어 비용 등
	법인설립비	· 사업자의 법인설립을 위해 집행되는 법무사 수수료
	회계감사비	· 공사 지정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
	세무기장료	· 세무 신고를 위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기장 대행 수수료
여비	해외여비 (총재무지원금 20%초과불가)	· 공사 지원 로드쇼·박람회 참여, 계약, 투자확약 등 해외 출장 시 집행되는 비용
광고선전비	홍보비	· 제품(서비스)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, 제작물, 광고게재비, 리플렛 등에 소요되는 비용
	팸투어비	· 언론홍보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홍보 확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소요비용

※ 세부 내용 및 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